

##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4. 3. 7.

제출자 : 남구청장

### 1. 개정 이유

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분리수거 철저 이행으로 쓰레기배출의 준법정신을 계도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골자

-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무단투기 금지 조항을 위반한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소 10,000원이던 것을 25,000 ~ 1,000,000원까지로 과태료 부과 상향 조정
- 다량배출자중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,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는자의 과태료가 최소 300,000원이던 것을 400,000 ~ 1,000,000 원까지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
- 배출자가 보관시설, 용기 부적합으로 인한 개선, 대체 명령등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금액이 최소 20,000이던 것을 50,000 ~ 1,000,000원까지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.

### 3. 참고 사항

- 폐기물관리법

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

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            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##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(제12조 관련)

(단위:천원)

부 과 대 상	부 과 금 액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가. 1키로그램 미만	10		
나. 1키로그램 이상 100키로그램 미만	30		
다. 100키로그램 이상 1톤 미만	50		
라. 1톤 초과 매튼마다	50		
2.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종류·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	300	600	1,000
나.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	10	30	50
3. 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가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	300	600	1,000
나.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	20	50	100

-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"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"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.
-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반복 하는 경우에 한하며 3차이상 위반시는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.
- "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"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.
- 구청장은 "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"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[ 별표 2 ]

##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[ 단위 : 천원 ]

부 과 대 상	부 과 금 액		
	1차위반 또는 위반시 마다	2차위반	3차위반
1.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			
가.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(담배꽁초, 휴지통)을 버린 자	25		
나. 간이보관기구(비닐봉지, 천보자기등)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	50		
다. 대형폐기물(가구, 가전제품등)을 버린 자	200		
라. 휴식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	200		
마. 차량·손수레등 별도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	500	700	1,000
바.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(건축폐재류 등)을 버린 자(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법 제17조 제1항의 처리업자는 제외)	1,000		
2.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			
가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	400	700	1,000
나. 다량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(제6조 1항 위반자 포함)	50		
3.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 한 자			
가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	400	700	1,000
나. 일반 가정의 경우	50		
다. "가"항및"나"항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	100	200	400

- 위반 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"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"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.
- 위반 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며 3차이상 위반시는 3차위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.
- "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"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.
- 구청장은 "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"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